

# 코엑스 마곡 행사장 폐기물 위(수)탁 처리계약서

폐기물 배출자인 주식회사 (이하 “배출사” 이라 함) 과 수집·운반 업체인 더바른환경(주) (이하 “수탁사” 이라 함) 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(수)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계약목적) : 본 계약은 “배출사”가 전시 준비, 운영, 철수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사업장 폐기물을 “수탁사”에게 적법하게 수집·운반·처리를 의뢰하고, “수탁사”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계약기간) : 본 계약은 아래 기간인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 ~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 로 하고, 전시 종료 후 1일 이내 철거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유효하다.  
- 전시 준비 / 운영 / 철수 기간 전체

제 3 조(처리 범위) :

1.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, 운반, 처리
2. 음식물, 대형, 산업폐기물, 지정폐기물은 별도 협의 및 별도 비용 적용

제 4 조(계약금액 및 지급) :

1. 정산금액 = 폐기물 발생량(m<sup>3</sup>) × 70,000원 (부가세 별도)
2. 수탁사는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, 배출사는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.
3. 입금계좌 : 우리은행 159-04-108891 더바른환경(주)

제 5 조(배출사의 의무) :

1. “배출사”는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며, 혼합 배출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2. “배출사”는 폐기물 보관 장소를 전시장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.
3. 불법폐기물 또는 유해성 폐기물을 임의 배출한 경우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“배출사”가 부담한다.

제 6 조(수탁사의 의무) :

1. “수탁사”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.
2. “수탁사”는 처리 내역을 배출사에 제공한다.
3. “수탁사”는 폐기물 방치가 없도록 정해진 주기에 따라 수거한다.

제 7 조(계약해지) : 상호업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의기간을 두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“배출사”와 “수탁사”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

“배출사” (폐기물 배출자)

사업자등록번호 :

주 소 :

상 호 :

대 표 :

“수탁사” (수집·운반 업체)

사업자등록번호 : 212-81-01601

주 소 :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7

상 호 : 더바른환경(주)

대 표 : 박 옥 남

